

변경대비표(일반및자펀드)

1. 대상 펀드:

| no. | 펀드명 | 투자 대상 자산 | 환매 수수료 | 결산 | 변동 성 | 기타 |
|-----|--|----------|--------|----|------|--------|
| 1 | 미래에셋단기채알파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 | - | - | ○ | ○ | - |
| 2 | 미래에셋대형주포커스증권투자신탁 2 호(주식) | - | - | ○ | ○ | - |
| 3 |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3040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 | - | - | ○ | ○ | |
| 4 |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5060 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 | - | - | ○ | ○ | - |
| 5 |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5060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 | - | - | ○ | ○ | - |
| 6 |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6070 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 | - | - | ○ | ○ | |
| 7 |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 9-2 호 | - | - | ○ | - | - |
| 8 | 미래에셋배당과롱숏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) | - | - | ○ | ○ | - |
| 9 |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) | - | - | ○ | ○ | |
| 10 |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) | - | - | ○ | - | - |
| 11 | 미래에셋연금인사이트플러스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 | - | - | ○ | ○ | - |
| 12 | 미래에셋연금팬아시아컨슈머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 | - | - | ○ | ○ | |
| 13 | 미래에셋우리아이친디아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 | | | ○ | ○ | - |
| 14 |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투자회사(주식) | - | - | ○ | ○ | - |
| 15 |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 3 호(주식) | ○ | ○ | ○ | ○ | 5), 6) |
| 16 | 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 | - | - | ○ | ○ | - |
| 17 | 미래에셋차이나그로스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 | - | - | ○ | ○ | - |
| 18 |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리치플랜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 | - | - | ○ | ○ | - |
| 19 | 미래에셋코리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 | - | - | ○ | ○ | - |
| 20 | 미래에셋퇴직연금배당프리미엄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 | - | - | ○ | - | - |
| 21 |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 4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 | - | - | ○ | ○ | |
| 22 | 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 3/10 증권투자신탁 4 호(채권혼합) | | | ○ | ○ | |

2. 변경 사항:

- 1) 투자대상자산 추가
- 2) 환매수수료 삭제
- 3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
4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
5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6) 법 개정사항 반영

3. 효력발생예정일: 2024년 1월 26일 (금)

4. 변경 내용:

1) 투자대상자산 추가

[집합투자규약]

| 항목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---------------|--|---|
| 제 15 조(투자대상자산 등) | <p>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 ~2. <생략></p> <p><u>3. <신설></u></p> | <p>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 ~2. <생략></p> <p><u>3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)</u></p> |

[투자설명서]

| 항목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제 2 부. 8. 가. 투자대상 | <p>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<생략> <신설></p> | <p>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<u>환매조건부매수</u> <생략> ※주) <u>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</u></p> |

2) 환매수수료 삭제

-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3호(주식)

[집합투자규약]

| 항목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----------|---|---|
| 제39조(환매수수료) | <p>① <u>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 별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u></p> | <p><u>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</u></p> |

| | | |
|--|--|--|
| | <p>② <u>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u></p> <p>1. <u>종류C1 수익증권</u>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2. <u>종류C2 수익증권</u>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3. <u>종류C3 수익증권</u>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4. <u>종류C4 수익증권</u>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5. <u>종류C5 수익증권</u>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6. <u>종류I 수익증권</u>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7. <u>종류C-W 수익증권</u>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8. <u>종류C-e 수익증권</u>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 | |
|--|--|--|

[투자설명서]

| 항목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------|---|---------|
| <환매수수료> | [C1, C2, C3, C4, C5, I, C-W, C-e] 90 일미만: 이익금의 70% | 해당사항 없음 |

3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
| 항목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|------|--|
| 요약정보 < 투자비용 > | - | <u>총보수·비용(피투자집합투자 기구 보수포함) 업데이트</u> |
| 제 2 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| - | <u>총보수·비용(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 함) 및 증권거래비용 등 업데이트</u> |
| 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 항 | - | <u>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</u> |
| 제 5 부. 4. 가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 역 | - | <u>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업데이트</u> |

4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
| 펀드명 | 변경 전 등급 | 변경 후 등급 | 변경 전(%) | 변경 후(%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미래에셋단기채알파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 | 5 | 5 | <u>1.34</u> | <u>1.42</u> |
| 미래에셋대형주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2호(주식) | 2 | 2 | <u>23.83</u> | <u>17.59</u> |
|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 | 3 | 3 | <u>14.36</u> | <u>10.5</u> |
|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 | 4 | 4 | <u>6.98</u> | <u>5.96</u> |
|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 | 4 | 4 | <u>7</u> | <u>5.97</u> |
|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607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 | 4 | 4 | <u>5.47</u> | <u>5.17</u> |
| 미래에셋배당과롱숏증권자투자신탁(주식혼합) | 4 | 4 | <u>9.69</u> | <u>6.79</u> |
| 미래에셋슬로몬단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 | 5 | 5 | <u>0.99</u> | <u>1.18</u> |
| 미래에셋연금인사이트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 | 3 | 3 | <u>14.46</u> | <u>10.81</u> |
| 미래에셋연금팬아시아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 | 2 | 2 | <u>18.93</u> | <u>17.27</u> |
| 미래에셋우리아이친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 | 2 | 2 | <u>20.11</u> | <u>16.3</u> |
| 미래에셋인텍스헤지증권자투자회사(주식) | 4 | 4 | <u>5.94</u> | <u>5.38</u> |
|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3호(주식) | 2 | 2 | <u>22.21</u> | <u>16.51</u> |
| 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 | 2 | 2 | <u>21.05</u> | <u>15.14</u> |
| 미래에셋차이나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 | 2 | 2 | <u>24.92</u> | <u>22.54</u> |
|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리치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 | 2 | 2 | <u>20.07</u> | <u>16.31</u> |
| 미래에셋코리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 | 2 | 2 | <u>24.54</u> | <u>17.46</u> |
|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 | 4 | 4 | <u>9.23</u> | <u>8.01</u> |
| 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3/10증권자투자신탁4호(채권혼합) | 4 | 4 | <u>8.11</u> | <u>6.19</u> |

5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| 항목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---------------|------|---|
| 제2조(용어의 정의) | <신설> | - “고난도금융투자상품”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 |
| 제53조(고난도금융 투자상품) | <신설> |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 |

6) 법 개정사항 반영

[집합투자규약]

| 항목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-|------|------|
|----|------|------|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 |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<u>투자신탁재산으로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
| 제15조(투자대상자산 등) | -채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 -자산유동화증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 | <삭제> |
| 제17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| 2. <생략> 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<생략></u> | 2. <생략> 나. <삭제> |
| 제42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| 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<u>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u> ②~③ <생략> <신설> | 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<u>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</u> ②~③ <생략> 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<u>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u> |

[투자설명서]

| 항목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---------------|--|------|
| 제2부. 8. 가. 투자 대상 | -채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 -자산유동화증권 | <삭제> |

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|--|
| | <p>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</p> <p><생략></p> | |
| 제2부 8. 나. 투자 제한 | <p>-동일종목투자 (예외)</p> <p>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</p> <p>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</p> <p>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</u></p> <p><u>다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<생략></u></p> | <p>-동일종목투자 (예외)</p> <p>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</p> <p>나. <삭제></p> |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